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49

발의연월일: 2024. 11. 29.

발 의 자:조정훈·조경태·인요한

박형수 · 김용태 · 김미애

김대식 · 김민전 · 이인선

최수진 · 정성국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보건법」 및 「학교급식법」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유치원에는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나, 현행법은 교사의 종류를 정교사와 준교사로만 구분하고 교사의 자격 요건도 정교사와 준교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유치원에 배치된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에 대해서는 교사의 적격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미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유치원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고, 그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별표 2).

법률 제 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정교사(1급·2급)·준교사"를 "정교사(1급·2급), 준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한다.

별표 2의 준교사란 다음에 보건교사(1급)·보건교사(2급)·영양교사(1급) 및 영양교사(2급)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건교사	1.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보건교사 경		
(1급)	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1. 대학·산업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보건교사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급)	2. 전문대학의 간호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		
	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영양교사	1.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영양교사의		
(1급)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영양교사 (2급)	1.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		
	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제3항 및 「학교급식법」 제7조제 1항에 따라 유치원에 배치되어 근무한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력은 각각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력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초·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제22 조제2항 또는 「초·중등교육법」"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교원의 자격) ① (생 략)	제22조(교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사는 <u>정교사(1급·2급)·</u>	② <u>정교사(1급·2급),</u>
<u>준교사</u> 로 나누되, 별표 2의 자	준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u>영양교사(1급 · 2급)</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	
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